

# 장비 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자기 소유의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하기 물건을 수령하였다.

## [목적물건]

구 분	물건정보
장비의 표시	제조회사 및 품명 : 수 량 : 증명번호 : 기 타 :

## 제2조

- 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을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되었던 메리야쓰 방직기술 (Amfit 가공) 점조 재실시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전기 계약이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사용대차계약도 실효하며, 차주 을은 대주 갑에게 차용 계약의 실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차주 을은 차용물을 제2조에 정한 메리야쓰 방직기술 점조 재실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차주 을은 차용물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수입에 있어서의 운임, 관세, 양육, 통관경비 등을 포함함)를 부담한다.

제5조 차주 을은 기계의 인도를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차용물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하기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 1) 기계의 수선비, 공조공과 및 기계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준 손해는 일체 차주 을이 부담한다.
- 2)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기계의 전대, 사용권의 양도, 명의대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기계의 소재지 또는 현상을 변경 혹은 타물을 첩가 또는 기계에 첩부한 번호, 성명, 상표, 증명번호 등을 제거, 말소, 변경,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 4)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지시에 따라 대주 갑을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차용물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5) 차주 을은 기계의 멸실, 훼손, 소모 또는 차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대주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차주 을에게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주 갑은 하등의 통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기계에 대하여 제삼자로부터 유치권, 우선특권 등의 주장을 받았을 때.
- 2) 차주 을이 제삼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받았을 때.
- 3) 차주 을에게 파산, 화해,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 4) 차주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변경했을 때.
- 5) 차주 을이 본 계약이나 대주 갑, 차주 을 간의 다른 계약에 위반했을 때.

제7조 차주 을은 자기에게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주 갑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기계에 대하여 제삼자로부터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는 기계가 대주 갑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부당한 처분집행을 받지 않도록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조 차주 을이 제6조에 의한 기계의 반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대주 갑 또는 대주 갑의 대리인은 미리 차주 을에게 통지한 후 기계의 소재장소에 들어가 기계의 점유를 회수 반출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대주 갑이 기계를 반출할 경우 차주 을이 대주 갑의 승낙을 얻거나 또는 승낙 없이 기계에 추가한 물건을 포함하여 기계를 반출할 수 있다. 제8조 및 본조에 의하여 차주 을이 받은 손해에 관하여 대주 갑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비

제10조 대주 갑 또는 대주 갑의 대리인은 수시 차주 을의 영업소 혹은 기계의 소재장소에서 기계를 점검하며 차주 을에게 사용상의 지시를 할 수 있고 차주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상의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대주 '갑'	주 소	
	대표(이사)	(인)
	상 호	
대주 '을'	주 소	
	대표(이사)	(인)